

2013년도 공공기관보유기술공동활용지원사업

신 청 안 내 서

2013. 7

한 국 연 구 재 단

목 차

I.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1
II. 사업내용 및 신청요건	4
III. 사업추진 절차	7
IV. 평가방법	8
V. 신청서류 및 문의처	8
VI. 사업수행 관리	9

〈관련 양식〉

1.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 공문	11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2
3.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청서	13
4.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과제계획서	14
5.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	28

I.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1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R&D IP협의회 회원기관* 등)이 보유한 특정분야의 기술(특허 등)을 공동으로 패키징(포트폴리오 구축)하여 기업 등에 효과적으로 연계(라이선싱, 후속연구, 합작투자 추진 등)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 R&D IP 협의회 : 대학·출연(연) R&D성과의 효율적 창출→발굴→보호→확산→사업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13.6월 현재 총 93개(정회원 47, 준회원 44, 특별회원 2) 기관이 참여 중>
- 특정분야 기술의 공동포트폴리오(技術群)를 구축하여 공공연구기관 성과확산 전담조직(TLO)의 연구성과 활용능력 신장

2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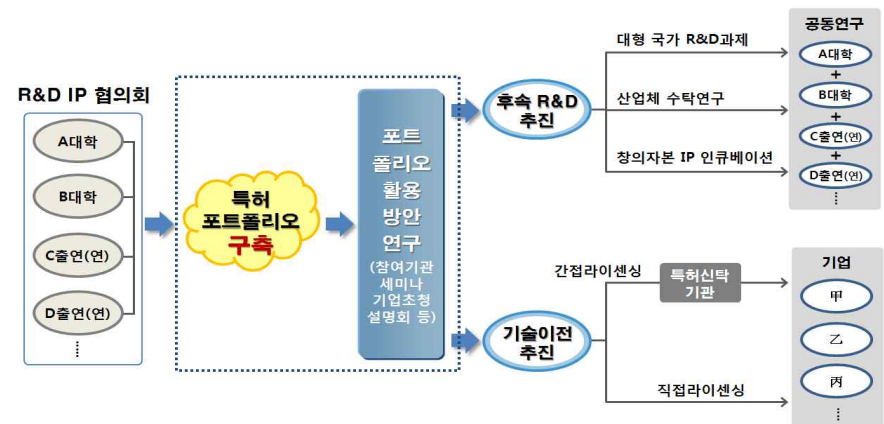
- (TLO 간 협력) TLO들이 포트폴리오 구축을 매개로 대상기술의 발굴·평가·마케팅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포트폴리오 구축과정을 통해 선도 TLO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관리의 노하우와 경험을 후발 TLO에 전수
- (부처 간 협력) R&D IP협의회의 공동 운영 부처인 미래부와 특허청이 협력하여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공동활용 모델 확립
 - ※ 단, 연구비 지급 및 정산은 각 부처별로 시행
- (공감대 조성) 공공기술의 이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별 TLO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마케팅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공감대 조성

3 공동 포트폴리오의 개념 및 필요성

□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의 필요성

- 대다수 공공연구기관(특히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술만으로는 CDMA 등과 같은 대형기술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기술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
- 이에 특정분야의 핵심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형기술 설계를 위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R&D 성과물의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함
- 산·학(연) 간의 기술이전이나 공동연구, 합작투자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기업과 연구기관과의 개별협상이 아닌 포트폴리오별 협상이 가능해야 함
 - 예를 들면 라이선싱 계약에서 여러 지식재산을 개별적으로 협상하기보다 포트폴리오 단위로 협상할 수 있다면 기업의 업무량이 경감되고 편의성도 높아질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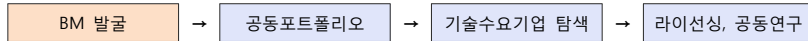
<공공기술의 포트폴리오 구축 및 활용 개념(예시)>



□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 모델

- 기술의 특성 및 활용 목적,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의지 등에 따라 공동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형태로 구축 가능

<모델 1> 미래유망 제품·서비스 콘셉트 창출형 포트폴리오 구축모델



<모델 2> 기업 기술수요 기반형 포트폴리오 구축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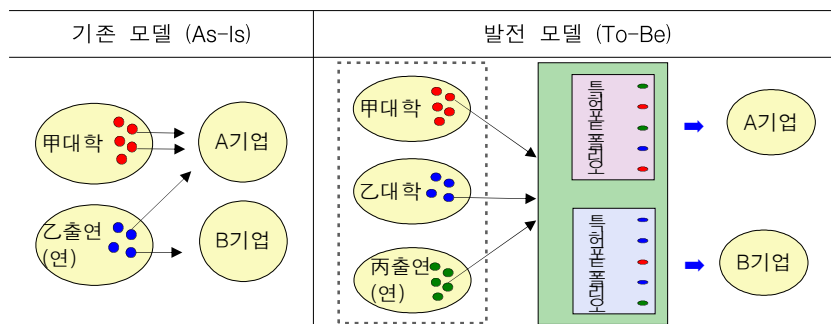
<모델 3> 핵심기술 기반형 포트폴리오 구축모델



□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의 이점

- (기업 친화적 기술관리) 공공연구기관이 개별기술을 특정분야 별로 패키징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손쉽게 탐색·소싱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활용가치 향상) 공공기술을 포트폴리오별로 관리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경제적 가치 향상 및 활용(기술이전, 실용화를 위한 후속연구 등) 가능성 제고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기술사업화 발전 모델>



II. 사업내용 및 신청요건

1 사업내용

□ 사업개요

- 대학, 출연연의 성과확산 전담조직(TLO)들이 특정분야 기술(특히 등)을 공동으로 패키징(포트폴리오 구축)하여 기업 등에 효과적으로 연계 (라이선싱, 후속연구, 합작투자 추진 등)할 수 있도록 제반활동 경비 지원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관련 제반활동(예시)>

- ① 주관기관 보유기술 중 타 기관(참여기관)과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한 대상제품(또는 서비스, 기술 등) 확정
- ② 대상기술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TLO 컨소시엄(주관기관 + 참여기관들) 구성
- ③ 컨소시엄 내의 연구회(세미나 및 토론회)를 통해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론 (요소기술의 도출, 가치평가, 기술마케팅, 기술의 제품적용 가능성 분석) 도출
- ④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제시한 후보기술의 적정성 평가 ⇒ 개별 요소기술의 확정 및 포트폴리오 구축
- ⑤ 기술마케팅(유관기업 초청 설명회 개최 등) 실시

□ 사업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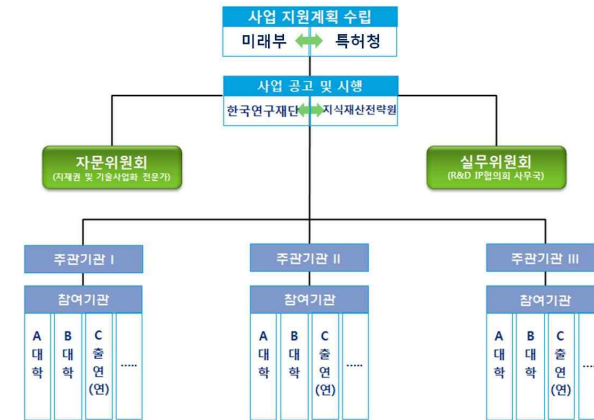
-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분담) 각 부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역할 분담, 협력
- (자문위원회 활용)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 방향 가이드
- (실무위원회 가동) R&D IP 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담당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사업실무위원회를 통해 진도관리 및 현안사항 해결

- (과제 간 협력과 경쟁) 참여과제 간 정보교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우수과제 포상
 - 10개 내외의 컨소시엄 보유기술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IP성과 확산 포럼 개최(9월 중)
- (기술사업화 PM의 지원) 컨소시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개별 과제들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지원
 - (협업 지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연구책임자가 공동으로 포트폴리오 구축·활용에 필요한 주요 의사 결정
 - (교류 지원) 컨소시엄 외부의 자문위원, 기업 기술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연구회 운영지원
 - (점검 지원) 과제 마일스톤, 과제수행 협력기관의 추진사항 점검 및 결과에 따라 협력기관 교체 요청

□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 (미래부, 특허청)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사업 지원계획 수립
- (한국연구재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의 홍보·과제선정·협약·진도관리 등 추진
 - 단, 기관별 지원과제의 연구비 지급·정산 등은 각자 수행
 -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주관기관) 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요구사항과 신청서에 근거하여 참여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과제 수행
 - (연구회) 해당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연구회(멤버(예시) :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산업계) 구성·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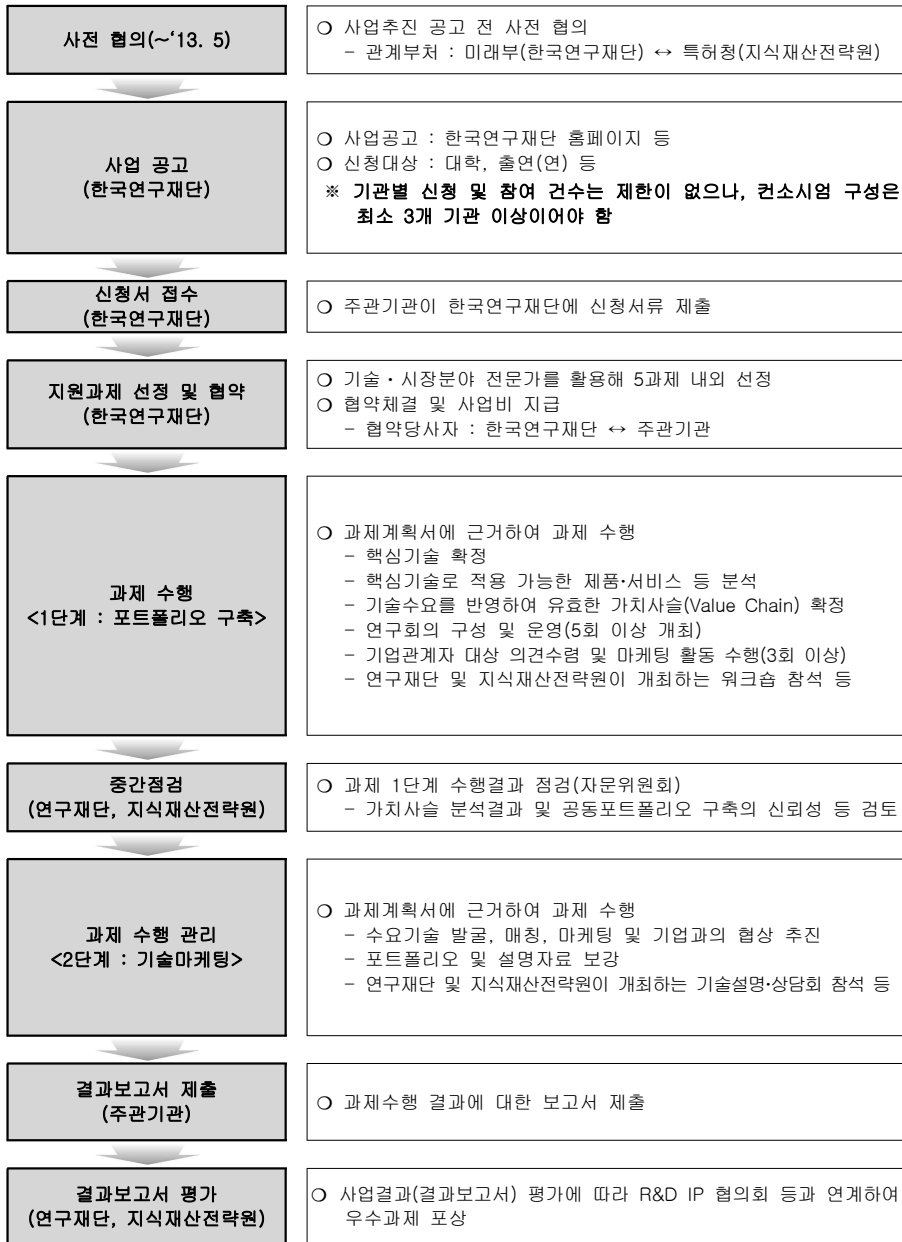
<사업의 추진체계>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R&D IP 협의회 회원기관 등) ○ 참여기관 :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 ※ 기관별 신청 및 참여 건수 제한 없음. 단, 컨소시엄 구성은 최소 3개 기관 이상
과제 책임자	○ 주관기관의 성과확산전담부서(TLO 등) 책임자(팀/과)장급 이상 ※ 본 사업은 연구결과의 '분석'을 수행하는 과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의한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3책 5공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
지원내용	○ 과제당 100백만원 내외
지원기간	○ 10개월 내외
지원건수	○ 5과제 내외
주관기관의 의무	○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참여기관(R&D IP 협의회 회원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의 선정(참여기관 2개 이상) ○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5회 이상 개최) ○ 기업관계자를 초청하거나 방문하여 포트폴리오 구축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마케팅 활동 수행(주관-참여기관이 공동으로 3회 이상 수행) ○ 기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개최하는 워크숍, IP성과확산 포럼 및 기술설명·상담회에 참석 등

III. 사업추진 절차



IV. 평가방법

1 평가항목 및 기준

구 분	착안점	배점
수행계획	- 공공기관 간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의 필요성이 높은 과제인가? - 과제계획(포트폴리오 활용 타깃 선정, 외부 환경분석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 사업비 집행계획이 적절한가?	40
수행능력	- 주관기관 등은 포트폴리오 구축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과제 수행조직(참여기관, 연구회, 기관간 역할분담 등)의 구성은 적절한가? - 주관기관 등의 수행조직은 지재권 관리 경험(특허자산 실사,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기술이전 등)과 능력(과제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30
결과활용	-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계획이 구체적인가? - 과제수행을 통해 산출된 공동포트폴리오의 활용(과제목적 달성)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30

2 평가방식

- (평가위원회) 기술분야 전문가와 기술시장 전문가(변리사, 기술가치 평가 전문가 등)가 공동 참여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토론평가 + 자문위원회 종합평가
 - 평가위원회는 사업신청서 발표에 대해 토론평가(추천순위 결정)
 -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종합평가

V. 신청서류 및 문의처

1 신청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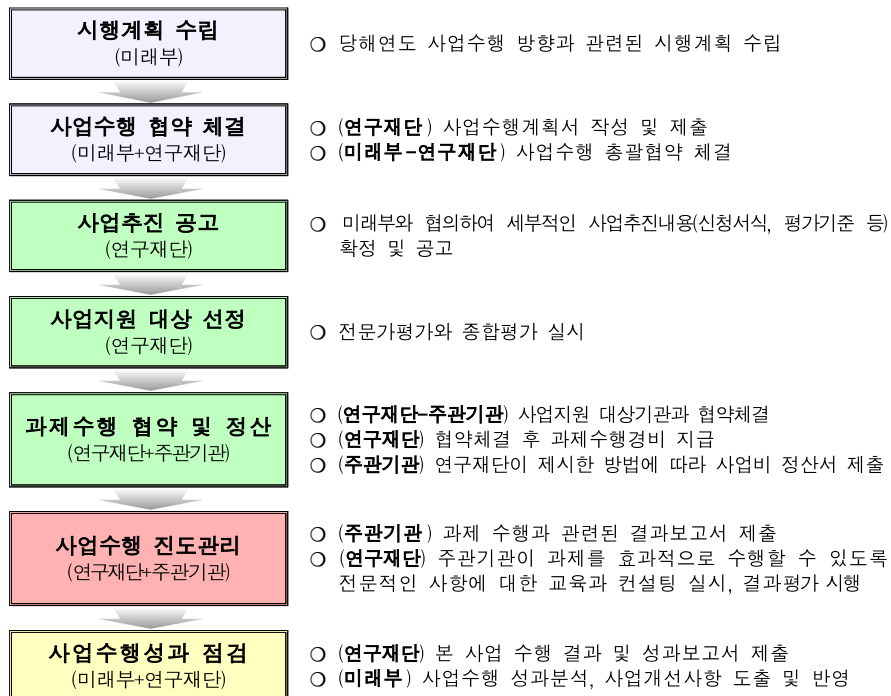
구분	내용	비고
공문서	○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 공문 (1부)	<양식 1>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2>
신청서	○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양식 3>

② 제출 및 문의처

구분	세부 내용
신청절차	○ 신청서류 일체(양식 1, 2, 3)를 연구재단 지정 이메일(mbd@nrf.re.kr)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 제출의 경우, 원본이 필요한 서류(공문, 증빙서류 등)는 반드시 스캔하여 제출
제 출 처	○ 이메일 : mbd@nrf.re.kr ○ 우 편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헌릉로 25 한국연구재단 성과확산팀
제출기한	○ 2013년 8월 00일(00) 오후 6시까지 (*우편도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접수) ○ 웹사이트 : www.nrf.re.kr → 사업안내 → 전체사업목록 → 교육·인력
문 의 처	양성사업 →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 전 화 : (02) 3460-5555, 5552, 5566 ○ 이메일 : shahn@nrf.re.kr , grace292@nrf.re.kr , andu55@nrf.re.kr

VI. 사업수행 관리

① 사업수행 절차



② 사업 운영 및 관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사업관리
- 단,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과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 활용사업 관리지침』(추후 공지)에 따름

③ 협약체결

- 최종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 체결
 - 개별과제 협약 : 양자(한국연구재단 - 주관연구기관) 간 협약

구 분	내 용
협약당사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주관기관*(과제책임자**)
주요내용	지원과제 수행과 관련된 주관기관의 권리와 의무

* “주관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본 사업의 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의 장과 협약을 통해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과제책임자”라 함은 주관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또는 성과관리부서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경험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자로서 해당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책임자를 말함

④ 사업비 정산

- 지원된 사업비의 사용과 정산(집행 잔액 반납 포함)은 상기 규정에 따라 관리
 - 협약기간(지원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원금에 자동 산입하여 사용
 - 지원된 사업비는 협약기간(지원기간) 내에만 집행
 - 협약(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잔액(이자 포함)은 관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
- 정산방법 : 관리기관이 지정한 양식과 방법에 따라 정산서류 제출

[양식 1] <검은색 이외의 다른 색 글자는 보고서 작성 후 삭제 요청>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 공문

실제 공문서 서식은 해당기관의 고유양식을 활용하되 아래 제시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 공문서 제목 : 2013년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 수신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성과확산팀장)

2013년도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과제명	과제책임자	
	소속	성명
□□□		
△△△△		

* 기관 당 복수 신청이 가능하며 복수 과제신청의 경우, 신청서는 과제별로 제출

별첨 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2 참조>

2. □□□ 신청서 <양식 3 참조>

3. △△△△ 신청서 <복수 과제 신청의 경우>

소속기관장 (직인)

[양식 2] <검은색 이외의 다른 색 글자는 보고서 작성 후 삭제 요청>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의 개인정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NTIS시스템에 제공됨
- 주민등록번호는 연구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기본정보로 활용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3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공공기관보유기술공동활용지원 신청년도 2013

과제명

☐ 참여인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서 명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개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양식 3] <검은색 이외의 다른 색 글자는 보고서 작성 후 삭제 요청>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청서

과제명	공동 포트폴리오의 구축·활용을 대상으로 하는 ① 타깃 제품군 ②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예) 대용량 저장장치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소재·기계 융복합 기술의 공동 포트폴리오 구축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예) 나노재료 및 신소재 공동포트폴리오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과제목적 ※ 중복기재 가능	☐ 양도	☐ 실시권 허락	☐ 기술 지도	☐ 공동 연구	☐ 창업	☐ 합작 투자	☐ 기타
6T 분류	소분류 코드(*)	010111	기술명 (대/중/소분류)	IT/핵심부품/ 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기술 * 홈페이지(http://ernd.nrf.re.kr , 코드구분 : 6T분류코드)를 참고하여 소분류 코드, 기술명(대분류/중분류/소분류) 기재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부 서 명				직위(직급)		
	성 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 http://hurims.ntis.go.kr/researcher 에서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 및 조회 가능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휴대 폰 : e-mail :			
신청연구비	원		연구기간	201 . . . 부터 201 . . . 까지 (. . . 개월)			
추가부담금 ※ 의무사항 아님	원						
참여기관	한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설악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연구원		
	종로대학교 산학협력단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과제를 수행하고자 사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1. 과제계획서 1부 2. 참여 확인서 각 1부 2013 년 월 일 신청인(과제책임자) (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첨부 1]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과제계획서

과제명 : _____

〈 목 차 〉	
I. 컨소시엄 구성	00
1. 컨소시엄 구축의 배경 및 필요성	00
2. 컨소시엄 기관별 핵심기술의 내용	00
II. 포트폴리오 활용 타깃 선정	00
1. 타깃(제품, 서비스 등)의 내용	00
2. 타깃(제품, 서비스 등)의 구현 가능성	00
III. 외부환경 분석	00
1. Product(국내외 제품 및 시장) 동향	00
2. Patent(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술) 동향	00
3. Paper(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술) 동향	00
4. Policy(제품 및 기술에 대한 정부정책) 동향	00
IV. 과제수행 역량	00
1. 주관기관의 수행 역량	00
2. 참여기관의 수행 역량	00
V. 포트폴리오 구축 및 활용 계획	00
1. 수행 방법	00
2. 수행 일정	00
3. 과제 수행팀 구성	00
4. 사업비 소요 명세서	00

I. 컨소시엄 구성

1. 컨소시엄 구축의 배경 및 필요성

2. 컨소시엄 기관별 핵심기술의 내용

주관기관명 :

- ① 보유 기술 내용
- ② 보유 기술의 특징점
- ③ 관련 연구자 정보
- ④ 관련 특허·논문 정보

참여기관명 :

- ① 보유 기술 내용
- ② 보유 기술의 특징점
- ③ 관련 연구자 정보
- ④ 관련 특허·논문 정보

참여기관명 :

- ① 보유 기술 내용
- ② 보유 기술의 특징점
- ③ 관련 연구자 정보
- ④ 관련 특허·논문 정보

II. 포트폴리오 활용 타깃 선정

1. 타깃(제품, 서비스 등)의 내용

2. 타깃(제품, 서비스 등)의 구현 가능성

가. 개요

구분	제 품 · 부 품 명		제 품 · 부 품 명			합계
	A 기술	B 기술	C 기술	D 기술	E기술	
AAA대 학						
BBB연 구원						
CCC대 학						
DDD대 학						
합계						

나. 적용가능성

- ※ 작성요령
- ① 보유기술이 활용되거나 예상되는 대상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특징
 - ② 보유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제품 및 서비스 분야의 개선사항

III. 외부환경 분석

※ 작성요령 : 포트폴리오 구축 대상기술 및 제품 등의 국내외 현황을 ① 제품 ② 특허 ③ 논문 ④ 정부 정책을 분석하여 제시

1. Product(국내외 제품 및 시장) 동향

※ 작성요령 : 주요기업의 제품·서비스 시장규모·점유율, 경쟁의 정도, 경쟁요인, 경쟁상황 변화 등을 분석

2. Patent(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술) 동향

- ※ 작성요령 :
- ① 공동포트폴리오 구축의 타깃 대상인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요소기술의 특허동향
 - ② 공동포트폴리오 구축의 타깃 대상인 제품 및 서비스 관련 기업의 특허동향

3. Paper(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술) 동향

※ 작성요령

- ① 공동포트폴리오 구축의 타깃 대상인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요소기술의 논문동향
- ② 공동포트폴리오 구축의 타깃 대상인 제품 및 서비스 관련 기업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동향(NTIS 활용)

4. Policy(제품 및 기술에 대한 정부정책) 동향

※ 작성요령 : 대상 기술 및 제품, 서비스 관련 법률, 규제, 표준인증 등 정책환경 변화가 시장 기회요인

IV. 과제수행 역량

1. 주관기관의 수행 역량

가. 주관기관 참여인력 현황(실제 참여인력만 기재)

성명	직급	주요경력	강점 기술분야	관련 자격사항

※ 주관기관에 소속된 인력만 작성하며, 성명, 주요경력, 강점 기술분야, 관련 자격사항 등 기재

나. 수행 역량

□ 대표적 기술이전 실적(2009년 1월 이후 실적) (10건 이내) <패키징 형태 제외>

년도	기술명	이전유형 (통상, 전용, 양도 등)	기술도입자	주요 내용 (계약규모 등)

□ 포트폴리오(패키징) 형태(*)의 기술이전 실적(2009년 1월 이후 실적)

년도	기술명	패키징한 특허수	이전유형 (통상, 전용, 양도 등)	기술도입자	주요 내용 (계약규모 등)

* 특허가 10건 이상 묶어서 이전된 실적만 기술

다. 포트폴리오 구축 대상기술 보유 현황

☐ 총괄표 (단위 : 건수)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타 지재권	합계
국내	해외	국내	해외		

주) 동일한 특허가 등록된 경우 출원 건수에서 제외

☐ 해외 특허 리스트

No.	발명의 명칭	국가	출원번호	등록번호
1				
2				

☐ 국내 특허 리스트

No.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1			
2			

☐ 기타 지재권

No.	명칭	지재권 유형	권리번호
1			
2			

2. 참여기관의 수행 역량 <참여기관별 작성>

가. ○○대학교

(1) 참여인력 현황(실제 참여인력만 기재)

성명	직급	주요경력	강점 기술분야	관련 자격사항

(2) 포트폴리오 구축 대상기술 보유 현황

☐ 총괄표 (단위 : 건수)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타 지재권	합계
국내	해외	국내	해외		

주) 동일한 특허가 등록된 경우 출원 건수에서 제외

☐ 해외 특허 리스트

No.	발명의 명칭	국가	출원번호	등록번호
1				
2				

☐ 국내 특허 리스트

No.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1			
2			

☐ 기타 지재권

No.	명칭	지재권 유형	권리번호
1			
2			

나. ○○연구소

V. 포트폴리오 구축 및 활용 계획

1. 수행 방법

※ 작성요령 : 포트폴리오 구축·활용 목적 달성에 필요한 방법론, 수행방식 및 추진체계에 대하여 작성

가. 컨소시엄(주관기관 + 참여기관) 내 구성원 간 협력 체계

나. 과제 추진 방안 및 전략

(1)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

(2) 기술이전·사업화 수요자의 발굴방법론

(3) 타깃(제품·서비스 등) 선정 방법론

(4) 포트폴리오 활용 수익의 배분 방법(사전 합의사항만 기재)

2. 수행 일정

연번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월)								
		8	9	10	11	12	1	2	3	4
1										
2										
3										
4										
5										
6										
7										
8										

3. 과제 수행팀 구성

가. 과제책임자

☐ 인적사항

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	--	--------	--	----	--

☐ 주요경력

연도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위	비고
부터 까지			

나.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생년 월일	성별 (남,녀)	소속기관	부서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과제 책임자										
사업참여 연구원*										

* 본 과제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실무담당자 등을 의미하며, 참여 연구원에게는 인건비, 연구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회의수당은 지급할 수 없음

4. 사업비 소요 명세서

본 사업은 간접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접비 계상 불가

가. 총괄

※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에 따라 신청사업비를 조정하여 협약 체결함

(단위:천원)

항목	연도		정부지원금	주관기관 부담금	합계
	비목				
인건비	• 내부인건비	지급용			
		미지급용	()		()
	• 외부인건비				
직접비	• 연구장비 및 재료비				
	• 연구활동비	주관 · 참여기관 사용			
		외부 컨설팅기관 활용			
	• 연구과제 추진비				
	•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사업비총액					

* 주관기관 부담금(지급용)은 계상하지 않아도 무방함

** 연동비목 계산을 위한 미지급용 인건비(참여율 30% 이내)는 “(금액)”의 형식으로 기재

***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에서 계상

**** 참여기관에 위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위탁연구비에는 간접비를 계상할 수 없고, 주관기관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생년 월일	성별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						
합계												

(나) 외부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명	성명	생년 월일	성별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합계										

(2) 직접비

(가) 연구장비·재료비

- ① 기기·장비 등 : 계상불가
- ② 재료비, 전산처리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나) 연구활동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국외 출장 여비		책 임 금 : 00인×00원×00회= 선 임 금 : 00인×00원×00회= 원 금 : 00인×00원×00회=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국내외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합 계				

(다) 연구과제추진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원)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책 임 금 : 00인×00원×00회= 선 임 금 : 00인×00원×00회= 원 금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 임 금 : 00인×00원×00회= 선 임 금 : 00인×00원×00회= 원 금 : 00인×00원×00회=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 제외)				
연구개발과제 수행 식대				
합 계				

(라) 연구수당 : 인건비×()%= 원

(3) 위탁연구개발비 : 원

[첨부 2]

공공기관 보유기술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주 관 기 관 명	
과 제 명	

상기 과제를 위해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며, 동 과제에 참여할 것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 아 래 -

1. 우리 기관은 상기 과제 결과물(공동 포트폴리오)의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주관기관과 참여기간 간 기술료 배분방식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며, 합의 도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 사업의 자문위원회의 중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 우리 기관은 상기 과제 결과물(공동 포트폴리오)의 기술이전 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중개수수료 등)를 사전에 합의한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술이전 전담부서 책임자 ○○○ (서명)

소속기관장 (직인)